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임순목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제안이유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고시되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은 범용 기술에 비해 시공실적이 미약한 관계로 진보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신뢰치 못하여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함.

나.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선진화 및 품질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신기술활용 심의와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심의·자문 요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보유사업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적용여부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신기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등을 정함(안 제9조)

사.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에 대해 신기술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유용한 자료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우수신기술 개발자와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안 제12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는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과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를 기준으로 충북의 건설신기술 활용은 78건으로 전국 2,110건의 신기술 활용공사건수 중 3.7%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167억 원으로 전국대비 3.46% 수준임.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여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하다면 이를 발주청에 적극 권고하여 기술선진화 및 품질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충청북도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하고 촉진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 신기술의 활용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하였고,
-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설계반영의무 사항을 정하였으며,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도록 정하였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에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기술을 활용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8. 14.~'17. 8.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과 촉진을 통해 기술선진화 및 품질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